수 신: DB 손해보험㈜

참 조 :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㈜ (Tel: 02-2011-0300 / Fax: 0503-8379-2008)

이메일 chaeeun.lee@lockton.com, sunjeong.park@lockton.com

(메일 접수시 수신에 대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. 회신을 받지 못하신 경우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.)

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사고 통보서

1. 피보험자(변호사) 인적사항

보험증권번호		피보험자	(등록번호 :)	
보험기간	~	소급담보일		년	월	일
보상한도	/ (1 청구당 / 연간총보상한도)	자기부담금			(1 -	청구당)
사업장 연락처	담당자성명 : 주 소 :	Tel)		Fax)		
*담당자연락처	010	* 접수 확인 알	림을 위하여	<u>반드시 기재</u>	하여 주시	기 바랍니다.

^{*} 소송 건의 경우 자기부담금 미만의 방어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피보험자 부담임.

Ⅱ. 피해자(의뢰인) 인적사항

상호(성명)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연 락 처	사업장 주소	
배상청구일	청구 금액	

^{※ &}lt;u>피해자가 개인인 경우</u> 피해자의 개인(신용)정보 처리동의서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진행 경과

날 짜	내 용	비고	
		업무 수임일	
		수임서류 수령일	
		제출서류 작성일	
		서류 제출일	
		수임업무 오류일	
		사고발생 인식일	
		손해배상 청구일	

[※]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수임 받은 일부터 시간경과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 기재요망!

1— 110				
1. 사고일자 :				
2. 청구일자 :				
3. 사고금액 :				
4. 업무담당자 :	- 변호사 :	- 직원 :		
5. 사고원인 :				

■ 손해사정사 선임관련

Ⅳ 사고 내용

보험업법 제 185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, 손해사정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고객님께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으며, 그 선임 의사를 금일로부터 3 영업일 내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. 손해사정사 선임 시 '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'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합니다.

고객님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거나, 3 영업일 내(회신기한 연장요청시 10 영업일) 선임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,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가 손해사정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당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 업무진행에 동의합니다.

상기 내용 및 사고 상세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신청합니다.

작성일: 20 년 월 일 피보험자 및 신청인: (인)

※ 3 페이지 사고상세를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사고상세

* 6 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요망		